

부산직할시 사하구 T.V 난시청지역 해소건의안

복지사회 국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정수행에 전념하시는 사하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언론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보처 장관님과 K.B.S 방송본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현정사상 최초로 태동된 구의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미숙아로서 지역의 이모저모를 살피다보니 벌써 출범5개월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시는 대부분 구의회에서 종결이 나는 문제를 의제로 선택하였지만 이번에 건의하고자 하는 T.V 난시청 해소 방안건은 비록 우리 구 의회에서 종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구민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는 3만9천세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오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하구 의회에서 난시청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할 사유

- 첫째, 부산시 전체 난시청 지역 27,100세대중 44.6%에 해당되는 12,074세대가 사하구에 해당(K.B.S 인정통계 수치임)
- 둘째, 난시청 지역 1차 확인후 주민들의 재차 확인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26,838세대가 순수 난시청지역 또는 K.B.S 창원방송 시청 가능지역으로 추가로 파악되어져 이는 부산시 난시청 지역의 거의 전부가 사하구에 밀집되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님.
- 셋째,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T.V 난시청으로 인해 구 전체 세대 약 50%에 해당되는 40,000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매월 시청료 2,000원을 납부하고 있음.
연간 8천만원 지출

나. 타구와의 비교

- 10% 미만 난시청지역 : 6개구
- 20% 정도 난시청지역 : 1개구
- 50% 미만 난시청지역 : 1개구(사하구)

다. K.B.S 간이 중계소(T.V.R) 설치계획

- '91년도 : 20개소 확정
* 경남에는 3개소가 있으나 부산은 전무
- '92년도 : 30개소 예정
- '93년도 : 40개소 예정
* K.B.S 1, 2 및 E.B.S T.V : 전국 681개소 존치

라. 건의사항

- 가) T.V 간이 중계소(T.V.R)의 조속한 시설(92년도중)
 - 중 계 탑 : 철탑 25m높이, 건물11평 규모
 - 설치위치 : 동태산(사하구 신평동 소재)
 - 총투자비 : 약 5억원 소요(T.V 중계소운영비 년 12,600천원 별도)
* '89년 10월 K.B.S에서 현지 입지 여건 기 조사
- 나) T.V 수신료 경감 조치
 - 경감기간 : T.V 중계소 설치시까지
 - 대 상 : 난시청 전세대(38,912세대)
 - 경 감 액 : 유선방송 시청료 감안 월 2,000원 정도
(기 지정되어 월 1,000원 경감 세대 포함)

1991년 8월 28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장 류 차 열

참 고 사 항

1. T.V 난시청지역 현황

가. 구 관내 지역분석

구 분	난 시 청 지 역						
	구 전 체	시청가능지역	총 계	K.B.S기관정	추 가 조 사		
					소 계	시청불가지역	K.B.S창원 방송지역
세대 수	87,708	48,796	38,912	12,074	26,838	12,677	14,161
%	(100)	(55.6)	(44.4)	(13.8)	(30.6)	(14.5)	(16.1)
비 고	13개 동 중 1개동 (장림1동) 제외 12개동 난시청지역 상존 * 거의 대부분이 유선방송에 의존(월 2,000원 시청료납부)			T.V수신료 월 1,000원 감면 시행중 (89. 10. 20)	○ 조사기간 : '91. 7. 1~7. 25 ○ 조사방법 : 사하구청주관각동현지조사 ○ 내 용 : 전면 시청불가지역 및 창원 방송시청지역과구분		

나. 구청에서 조치사항

- T.V시청료 감면 요구-'88. 9. 7 및 '88. 12. 10. 2차에 걸쳐 41,244세대 감액조치 요구
- K.B.S에서 조치-12,074세대에 대하여서만 월 1,000원 감면 조치

다. K.B.S의 적극적 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 불만고조 확산

- 감면 제외 지역 주민 : 29,170세대
- 기감면세대 : 감면액 미흡. 1,000원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
(유선방송 시청료 감안)

2. 구 의회에서 의 조치사항

가.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91. 8. 26)

T.V난시청 지역 해소방안 의안 상정

 →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나. 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91. 8. 27)

본 T.V 난시청 지역 해소책 방안이 구 소관업무는 아니나 우리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건의안을 작성 관련기관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조치 촉구토록 의결
다.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됨.